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7일 16시 03분



목차

목차	2
보도자료 - 건설	3
여수시, 청년월세 최대 240만 원 지급	3

보도자료

해명자료

여수시, 청년월세 최대 240만 원 지급

2023.04.05 조회수 626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김선화 연락처 061-659-4089

여수시(시장 정기명)가 지역 내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.

시에 따르면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 2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.

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19~34세 이하(1988~2004년생)로,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.

또한 본인 및 부모의 소득·재산 기준은 ▲청년 단독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은 1억 700만 원 이하 ▲청년이 가구원일 경우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재산은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.

신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포 홈페이지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.

시 관계자는 “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이 약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”며 “사업대상 청년은 혜택에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
한편, 시는 지난해 103명에게 7천만 원의 청년월세를 지급했으며, 신청자 급증으로 올해 3월 기준은 140여명에게 청년월세를 지급했다.



국토교통부

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

**청년월세
특별지원**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

2022년 8월 22일부터
1년간 신청가능!



**청년월세
특별지원사업이란?**

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
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

지원 대상

만 19세 ~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,
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
거주하는 무주택자

※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
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

제외 대상

- 주택 소유자
- 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
- 공공임대주택 거주
-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
-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

신청 방법

- ① 온라인 신청: 복지포털 홈페이지 (www.bokjiro.go.kr)
혹은 어플리케이션
 - ②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
- ※ 사전 모의계산: 복지포털(bokjiro.go.kr), 마이홈포털(www.myhome.go.kr)

지원 한도

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
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

※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

지원 기간

신청 기간

2022.8.22(월) 부터 1년간

지급 기간

2022년 11월 ~ 2024년 12월

소득·재산기준

- 소득: 원가구 중위소득 100%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
 - 재산: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천만원 이하
- ※ 청년가구: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'민법, 상 가족'
※ 원가구: 청년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)

첨부파일

전체(Zip)다운로드

4 여수시, 청년월세 최대 240만 원 지급.jpg (441 hit/ 310.3 KB) ↓

미리보기

목록

이전글

여수시, 친환경 상장케이스 사용 탄소중립 실천 '앞..

다음글

여수시, '여수사랑상품권'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

Yeosu Web Contents

